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3. 6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2월 16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행정위원회(2017. 3. 3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엄혜숙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발굴에 따라 상위 법령인 『국민건강증진법』의 위임 없이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, 『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』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흡연구역의 설치 제한 삭제(안 제8조제1항 단서조항)
- 조례 근거 조항 정비(안 제9조제1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발권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단서에 따라 “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”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는 바,
- 안 제8조제1항에서의 특정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은 상위법령인 『국민건강증진법』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사항으로,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,
- 『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』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입법체계나 자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9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근거가 없는 일부 장소의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, 같은 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의 삭제 (안 제8조제1항)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재정비 (안 제9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 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6.12.22. ~ 2017.1.11. / 20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제1항”을 “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5제1항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흡연구역의 설치 등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u>다만,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、③ (생략)</p> <p>제9조(금연지도원의 운영) ① 구청장은 「<u>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</u>」 제1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8조(흡연구역의 설치 등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u>〈단서 삭제〉</u></p> <p>②、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금연지도원의 운영) ① ----- 「<u>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</u>」 제16조의5제1항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